

◆ 질의와 회신 ◆

지방세법령 질의.회신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 -

1. 대도시내 합병법인 등록세 중과세 여부

【질 의】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 미만의 법인이 같은 대도시내에서 설립한지 5년 이상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가. 합병시점에서 발생하는 자본금 및 부동산의 중과세 여부

나. 합병 이후 존속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등기 및 자본금 변경등기에 대한 중과세 여부

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제7항 후단의 「자산」이란 자산총액(부채+자본)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및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7항에서 “대도시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기존법인)이 다른 기존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안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당시 기존 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산」이라 함은 부채+자본이 되는 것입니다.
(세정-1268, 2005. 6. 21)

2. 과점주주 취득세에 관한 질의

【질 의】

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XX(주)의 대주주인 개인A(23.94%)를 중심으로 특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B,C,D,E,F,G(A의 친족관계,42.97%)와 갑법인(A와 사용고용인관계, 2.12%)이 과점주주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D(20.4%), E(0.86%)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갑법인의 지분비율이 23.38% 증가되었을 경우 갑법인의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질의1)와

나. 갑법인은 XX(주)의 기타주주인 을법인의 주식을 32.84%만을 소유하고 있어 특수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갑법인이 을법인의 주식을 22.98% 취득함에 따라 을법인의 주식 55.82%를 보유하게 되어 을법인 또한 갑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할 경우 을법인이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것(질의2)으로써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회 신

질의1의 경우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는 주주 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51% 이상인 자들을 말하며, 주주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친족, 혈족관계 등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고,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관계법인에 51% 이상을 출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법인은 이미 A와 사용고용인관계로 인하여 특수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D,E 또한 A와 친족관계로 특수관계군을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갑법인이 D,E의 지분을 취득하였다더라도 이는 과점주주간 내부간의 거래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때에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법인이 기타주주인 을법인의 주식을 추가 취득함에 따라 을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출자하고 있는 관계에 있게되어 과점주주가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을법인이 XX(주)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을법인은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세정-1241, 2005. 6. 18)

3.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부동산 매각 후 재매입시 취득세 납세의무

【질 의】

가. 귀법인에서 질의한 사항은 한국토지공사가 정부의 “금융·기업구조개혁촉진방안”에 의거 민간기업 보유 토지를 매입한 뒤, 공익사업에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해 동 기업토지를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거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이하 “SPC”)에 매각(등기부상은 계속 토지공사 소유)하였으나,

나. 해산·청산 시점에 있는 SPC가 매각하지 못한 유동화 자산(기업토지)을 토지공사가 재매입할 경우 토지공사의 부동산 취득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것으로써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회 신

부동산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획득하였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88누919, 1998.4.25)고 할 수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토지공사가 SPC에 기업토지를 양도하여 유동화하고 토지대금 전액을 수령한 후, 자산양도계약서상 양도인의 우선매수권에 의거 감정평가가격으로 재매입하는 것은 비록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이 계속적으로 토지공사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토지공사의 해당 부동산 취득은 새로운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세정-1396, 2005. 6. 29)

4. 법인간 출자관계에 따른 과점주주 납세의무 해당여부

【질 의】

가. 귀법인에서 질의한 사항은 ○○에스티(주)의 주식을 대주주(이하 甲이라함)가 55.19%, ○○바이오텍(주)의 주식을 ○○에스티(주)가 26%, 甲이 45.08%, ○○엠에스씨(주)의 주식을 ○○에스티(주)가 37.99%, ○○바이오텍(주)가 45.7%, 甲이 16.31% 소유하고 있을 경우 ○○바이오텍(주)와 ○○엠에스씨(주)가 甲을 기준으로 과점주주가 되는지 여부(질의1)와

나. 과점주주가 된다면 甲이 ○○바이오텍(주)의 주식을 ○○에스티(주)로부터 5%이상 취득후 ○○에스티가 ○○바이오텍(주)로부터 ○○엠에스씨(주)의 주식 45.7%를 양수할 경우 ○○엠에스씨(주)의 주주간 주식이동에 따른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질의2)에 관한 것으로써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회 신

지방세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과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성립된다고 하였으므로 질의1의 경우 甲이 ○○에스티(주)에 50% 이상 출자하고 있으므로 ○○에스티(주)와 甲이 주주로 있는 ○○바이오텍(주)와 ○○엠에스씨(주)는 과점주주가 성립이 되며, 질의2의 경우 甲이 ○○바이오텍(주)의 주식을 5% 이상 취득함으로써 甲이 ○○바이오텍(주)에 50% 이상 출자하게 되므로 ○○엠에스씨(주)의 주주인 ○○바이오텍(주), ○○에스티(주), 甲은 특수관계가 형성되어 추후 ○○에스티(주)가 ○○바이오텍(주)로부터 45.7%를 양수받더라도 이는 과점주주간 내부이동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세정-1084, 2005. 6. 9)

5. 대도시내 공장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해당여부

【질 의】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설립·등기하는 경우 등록세가 중과세 되는 것인지?

회신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및 제4호와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규정에 의거 대도시 내 법인설립 또는 지점설치와 공장의 신설·증설·공장의 승계취득 등과 관련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제138조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한 후 동법시행규칙 제55조에서 법 제1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하여는 제47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본문 중 “법 제112조제3항의” 는 각각 “법 제138조제3항의” 로 본다고 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의 경우가 대도시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취득등기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상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및 제4호와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세정-1268, 2005. 6. 28)

6. 대도시내로의 법인 전입시기

【질 의】

대도시외에서 설립한 법인이 대도시내로 전입시 법인등기부상의 전입일이 사업자등록증 일보다 먼저인 경우 어느것을 본점 전입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및 그 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 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와 같이 대도시외에서 설립한 법인이 대도시내로 전입시 전입등기를 먼저 하고 사업자등록을 나중에 한 경우라면 등기일이 대도시내 법인전입일이 되는 것입니다.(세정-1399, 2005. 6. 29)

7. 대도시내 재단법인설립등기 등록세 중과세 해당여부

【질 의】

민법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대도시내에서 재단법인을 설립등기 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 설립등기에 따른 등기와 법인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호내지 제35호에서 규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은 법인등록세 중과세 예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와 같이 농협회원들의 문화복지사업을 위하여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재단법인은 상기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호내지 제3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예외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귀문의 농협문화복지재단이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와 법인설립등기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세정-1073, 2005. 6. 7)

8. 공동출자 법인이 산업단지내 공장용지에 공장을 건축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정사유 해당여부

【질 의】

甲법인이 연부로 취득중인 산업단지내 공장용지중 일부에 甲법인과 乙법인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丙법인이 공장을 건축하여 입주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정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사용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사용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甲법인이 산업단지 내의 공장부지를 연부로 취득 중 공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외국법인인 乙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별도의 丙법인을 설립한 다음, 상기 공장용지 일부에 丙법인이 공장을 건축하여 당초 사업계획에 의하여 甲과 乙법인이 생산하고자 한 제품을 생산하기로 하였다면 甲법인이 취득중인 공장부지에 대한 일부권리를 丙법인에게 양도한 것은 당초 공장용지 취득 후 사용목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신설된 丙법인으로 하여금 취득당시 목적하였던 사업계획을 승계하여 공장신축을 완성하고 공장용에 직접사용한 것으로서 당초 취득세 등을 면제한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1누10725, 1992.6.9)상기 甲법인이 공장부지를 丙법인에게 양도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세정-1064 2005. 6. 7.)

9.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시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여부

【질 의】

반도체부품을 생산하는 개인사업자가 공장용지 및 신축중인 공장건물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4호 및 제1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32조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은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던 공장용지에 건축물을 신축중 현물출자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축중인 건축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세정-992 2005. 6. 22)

10. 조경공사비, 견본주택건축비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

【질 의】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건축물 신축 도급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조경공사비, 조형물 제작설치비, 견본주택건축비, 분양을 위한 광고비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액 산정시 제외되어야 하는지

회 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의 조경공사비, 조형물제작설치비, 견본주택건축비, 분양을 위한 광고비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당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제반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세정-1280, 2005. 6. 21)

11. 창업중소기업 창업일 시점에 대한 질의

【질 의】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법인이 2003.5.27일 법인을 설립하여 화물운수업으로 창업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화물운수업을 종료하고 2005.4.15일 법인상호를 변경하여 전혀 다른 업종인 장갑제조업을 새로이 창업하였을 경우 당해 법인의 창업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으로써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회 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창업일은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법인을 화물운수업으로 설립한 후 사업부진으로 종전의 사업을 종료하고 법인상호를 변경하여 전혀 다른 업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법인의 창업일은 장갑제조업을 개시한 날이 아닌 법인설립등기일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정-1267, 2005. 6. 21.)

12. 회사정리법인의 신주발행 주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 여부

【질 의】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회사정리절차중에 있는 법인의 기존 주식을 감자처리 후 유상증자를 통해 주금을 납입하여 96.2%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 과점주주로 인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써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회 신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이하생략)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에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고 관리인은 정리회사

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를 대표하고,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정리절차개시 후에 정리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정리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과점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1994.5.24. 92누11138)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회사정리절차중에 주식을 96.2%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되기 전에는 정리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세정-1221, 2005. 6. 16)

13. 지방세 감면조례에 대한 질의

【질 의】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경매에 의해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가 감면되는지에 대한 것으로써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회 신

시·도세감면조례에서 분양(「임대주택법」…… 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건축한 일 정면적 이하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는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과 같이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취득하는 경우라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세정-1199, 2005. 6. 15)

14.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질 의】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일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회 신

과점주주의 취득세납세의무가 발생될 경우 과세표준은 과점주주가 성립된 시점의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물건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일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과세대상물건의 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외한 가액을 말하며, 감가상각을 월할계산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월할계산하여 공제한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세정-1435, 2005. 6. 30)

15.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등록세율 적용 및 과세표준액 적용 관련 질의

【질 의】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등기시 등록세율 적용과 공시지가가 실패매가보다 높게 산정되어 있을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 적용에 관한 것으로써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회 신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에서 농지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면서 동법 제273조의2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토지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등기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주택이 무허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 무허가건물의 부속토지도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어 등록세는 부동산가액의 2%를 적용한 세액에서 25% 세액감면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

조제5항에서 규정한 국가로부터의 취득, 경매에 의한 취득, 법인장부 등에 의거 입증되는 취득외의 취득으로써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보다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이 낮은 경우라면 동법 제111조제2항에 의거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세정-1364, 2005. 6. 28)

16. 공장 지방이전 면제 질의

【질 의】

대도시내의 사업자 A와 지방의 사업자 B가 공장을 맞교환하여 각자의 공장시설일체를 철거하여 상대방의 공장으로 이전하는 맞교환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지방세가 면제되는지에 대한 질의로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회 신

지방세법제82조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국세징수법제53조제1항제1호에서는 납부, 충당 등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된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차주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기준요건을 갖추기 위해 당해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같은법제13조(운송사업의 명의이용금지) 및 제26조(경영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법인(지입회사)명의로 등록한 후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개인차주 명의로 하여 자기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세무신고하는 등 당해 화물자동차가 사실상 개인차주의 사업용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법인(지입회사)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지입차주의 차량을 압류할 수 없는 것이므로(세정13407-371, 2003.7.4), 귀문의 경우 실질적으로 개인 차주의 차량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을 완납하였다면 당해차량의 차주는 지방세법 제82조 및 국세징수법제53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요구시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치 않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세정-1364, 2005. 6. 22)

17. 중앙조절식 에어컨 본체의 부착물교체시 개수에 따른 취득세 대상 여부

【질 의】

지방세법상의 시설물에 해당하는 중앙조절식 에어컨에 대한 본체 공사가 완료된 후 별도로 본체의 부착물에 해당되는 열교환기 및 배관시설 교체공사를 하였을 경우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

회 신

지방세법 제104조제10호에서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물중 승강기, 20kW이상의 발전시설, 난방용·욕탕용보일러, 7,560kcal급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에 한함) 등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에는 개수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본체에 해당되는 중앙조절식 에어컨의 교체없이 부착된 시설만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개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세정-1040, 2005. 6. 4)

18. 지입차량의 압류해제 관련 질의

【질 의】

실질적 차량 소유가 지입회사가 아니라 지입차주일 때, 지입차주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등록된 등록관청에 당해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지방세법제82조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국세징수법제53조제1항제1호에서는 납부, 충당 등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된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차주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기준요건을 갖추기 위해 당해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같은법제13조(운송사업의 명의이용금지) 및 제26조(경영의 위탁)의 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법인(지입회사)명의로 등록한 후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차량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개인차주 명의로 하여 자기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세무신고하는 등 당해 화물자동차가 사실상 개인차주의 사업용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법인(지입회사)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지입차주의 차량을 압류할 수 없는 것이므로(세정13407-371, 2003.7.4), 귀문의 경우 실질적으로 개인 차주의 차량에 대한 지방세 체납액을 완납하였다면 당해차량의 차주는 지방세법제82조 및 국세징수법제53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요구시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치 않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세정-1273, 2005. 6. 21)

19. 의료기기법에 따른 수입신고 품목의 면허세 부과 관련 질의

【질 의】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제1항에 의한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별표」 제1종 제104호의 의료기기의 품목별 수입허가 면허가 의료기기의 품목별 수입신고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회 신

지방세법 제161조제1항에 의하면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제1항에 의한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별표」 제1종 제104호에는 의약품·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의 품목별 수입허가 면허가 열거되어 있으며 의료기기법제14조제2항에 의하면 “수입업 허가를 받은 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품목별로 수입허가를 받거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허가과 신고를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제18조에서는 수입품목 허가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 수입품목신고는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등 수입품목 허가과 신고에 대해 그 절차와 과정등이 구분되어 있습니다.(세정-1271, 2005. 6. 21)

20. 소득할 주민세 이중납부 여부에 대한 질의

【질 의】

귀하께서 질의하신 당해 사업연도의 세액공제전 법인세액이 전년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보다 작을 경우 기 납부한 농업소득세 전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함으로써 소득할 주민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환급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관한 질의로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회 신

법인세법 제58조의2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이월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비록 전년도 농업소득세액이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초과하는 금액이 환급되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연도의 농업소득세할 주민세와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한도내에서 전년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액을 세액공제하고 산출한 법인세액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각각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중과세로 인한 주민세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세정-258, 2005. 4. 19)

21. 제3자가 착오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권 관련 질의

【질 의】

법인(납세의무자) 명의로 고지된 체납세액고지서를 제3자가 착오로 납부하였을 때 그 착오납부를 이유로 제3자가 납부금에 대한 환급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법 제30조의2 제1호에 의하면 납부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6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납세의무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

행령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법제60조에 규정한 제3자의 납부는 납세의무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에 한하며,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납세의무자 명의로 고지된 체납세액을 제3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정당하고 유효한 납부가 되므로 그 납부금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세정-258, 2005. 4. 19)

22. 법인이 동일 시·군내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종업원할 사업소세 판단기준

【질 의】

동일 시·군내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본점·하나로마트 등에 대한 사업소세 면세점 판단시 개별사업장별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회 신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지방세법 제24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사업소라 함은 같은 법 제243조제1호에서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시설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업원할 면세점의 적용기준은 같은 법시행령 제212조제1호 규정에 의거 “종업원의 수가 월 통상 50인 이하”인 사업소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농업협동조합의 사업장들(본점, 하나로마트, 농자재백화점, 주유소)이 1구 내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각각 분산되어 있으며 동 사업장이 사업소세 과세대상인 “사업소”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야할 것이므로, 동일 시·군내에 사업소가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 사업소별로 종업원수를 계산하여 면세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세정-1426, 2005. 6. 30)

23. 위탁에 의하여 공장 구내식당 급식 제공시 재산할 사업소세 납세의무 및 과세면적 산정

【질 의】

귀하께서 질의하신 위탁용역 계약에 의하여 산업체 공장 구내식당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내 위탁자의 종업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당해 구내식당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 납세의무가 수탁받은 급식업체인 귀하에게 있는 지 여부와 식사 장소까지도 포함되는 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 신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서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를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 또는 사무’란 당해 사업 일체에 대하여 사업주의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산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장 구내식당의 운영을 위임 받아 식당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일체에 대하여 귀하의 책임으로 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구내식당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식당내의 식사하는 장소는 식당운영에 필수시설로서 동 장소가 실제 식사를 위한 장소로 제공되고 있는 이상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면적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세정-1082, 2005. 6. 8)

24. 보험설계사를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업원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질 의】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보험모집수당(사업소득)을 지급받고 있는 보험설계사를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업원으로 볼 수 있는 지에 관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회 신

지방세법 제243조제6호에서 사업소세 과세표준 및 면세점 적용대상이 되는 “종업원”을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서, 같은 법시행령 제20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종업원의 범위를 급여지급 여부를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용계약 관계가 아닌 계약에 의하여 일의 성과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성과급만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종업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개인사업자인 보험설계사가 귀사와 고용관계가 아닌 위촉계약을 통하여 보험모집활동을 수행하면서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보험판매 실적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모집수당만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종업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할 것입니다.(세정-1012, 2005. 6. 3)

25. 서민주택용토지 취득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질 의】

주택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은 서민주택용 토지 취득시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 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국민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개발·공급하는 토지”에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개발·공급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대구광역시가 개발·공급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세정-1039, 2005. 6. 4)

26. 일반건설기계사업자의 사무실 소재지 변경신고시 연명신고자의 면허세 납세의무성립 여부

【질 의】

건설기계관리법제24조에 의한 일반건설기계대여 사업자의 사무실 소재지 변경신고시 그 연명신고자들도 각각 면허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 신

지방세법제160조에 의하면 “면허”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등록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제161조제1항에서는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제13조에 의하면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시 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사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신고서에 연명으로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계관리법제2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제66조에 의하면 건설기계사업자(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사무실의 소재지 등 변경신고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고증을 첨부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건설기계사업자가 대표자 명의로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 수리는 연명신고자에게도 행정청의 행위가 발생하고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일반건설기계대여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변경신고시 연명신고자도 지방세법제165조에 의하여 변경신고 증서를 교부받기 전까지 그 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세정-1331, 2005. 6. 28)